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 C 501A)

◇ 제 · 개정 이유

제연설비 성능개선 종합대책 마련 TF 운영을 통해 마련된 성능개선방안 반영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

◇ 주요내용

가. 성능시험 시기를 건물의 모든 부분이 아닌 제연설비의 성능과 관련된 부분이 완성되는 시점으로 함(안 제25조)